[별표 17] <신설 2014.12.8., 개정 2015.8.21. 개정 2016.7.1., 개정 2016.12.01., 개정 2019.10.24., 개정 2022.3.11.>

사료 내 사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및 사용기준(제11조제2항)

1. 사료 내 사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가. 항원충제(항콕시듐제) : 나라신, 디클라주릴, 라살로시드나트륨, 마두라마이신암모늄, 모넨신나트륨, 살리노마이신, 샘두라마이신, 크로피돌(총 8종)

나. 구충제 : 펜벤다졸(총 1종)

다.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 의한 사료첨가제 중 비타민제·프로비타민제·항산화제·항곰팡이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산제·미량광물질 및 그 합제

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

2. 사용기준

가. 양축용 고기소 배합사료

동물용의약품 종류	어린 송아지	육성우	번식우	종모우	임신우	포유우	큰소 전기	큰소 후기	허용기준
라살로시드나트륨	33	33	33	-	-	-	33	-	단위 : ppm
모넨신나트륨	33	33	33	-	-	-	33	-	
살리노마이신	-	20	20	-	-	-	20	-	

나. 양축용 젖소 배합사료

동물용의약품 종류	젖소 어린 송아지	젖소 중 송아지	젖소 큰 송아지	젖소 임신우	젖소 종모우	비유 초기	비유 중기	비유 말기	건유기	고능력우	허용기준
라살로시드나트륨	33	33	33	-	-	-	-	-	-	-	단위 : ppm
모넨신나트륨	33	33	33	-	-	-	-	-	-	-	
살리노마이신	-	20	20	-	-	-	-	-	-	-	

다. 양축용 돼지 배합사료

동물용의약품 종류	포유 자돈	이유돈	육성돈	비육돈	번식용 모돈	임신 돈	포유 돈	허용기준
펜벤다졸	4	4	4	-	-	-	-	단위 : ppm

라. 양축용 닭 배합사료

동물용의약품 종류	산란용 어린 병아리	산란용 중 병아리	산란용 큰 병아리	육용 어린 병아리	육용 중 병아리	산란전	산란 초기	산란 중기	산란 말기	종계용	육계 초기	육계 전기	육계 후기	허용기준
나라신	80	80	80	80	80	-	-	-	-	-	80	80	-	단위 : ppm
디클라주릴	1	1	1	1	1	-	-	-	-	-	1	1	-	
라살로시드나트륨	125	125	125	125	125	-	-	-	-	-	125	125	-	
마두라마이신암모늄	5	5	5	5	5	-	-	-	-	-	5	5	-	
모넨신나트륨	121	121	121	121	121	-	-	-	-	-	121	121	-	
살리노마이신	66	66	66	66	66	-	-	-	-	-	66	66	-	
샘두라마이신	25	25	25	25	25	-	-	-	-	-	25	25	-	
크로피돌	250	250	250	250	250	-	-	-	-	-	250	250	-	

※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동물용의약품명	허용기준(단위 : mg/kg)
나라신	불검출(0.7 이하)
디클라주릴	불검출(0.01 이하)
라살로시드나트륨	불검출(1.25 이하)
마두라마이신암모늄	불검출(0.05 이하)
모넨신나트륨	불검출(1.25 이하)
살리노마이신	불검출(0.7 이하)
샘두라마이신	불검출(0.25 이하)
크로피돌	불검출(0.03 이하)
펜벤다졸	불검출(0.03 이하)

마. 양축용 고기소·젖소·돼지·닭 이외의 동물용 배합사료 허용기준은 유사동물을 준용한다.

바. (삭제)

사.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사료첨가제와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는 품목허가(신고)된 사용기준에 따라 배합사료에 첨가하여 사용한다.

3. 주의사항

가. 제1호 이외의 동물용의약품은 사용을 금지하며, 사료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가축 유래 원료를 사용한 사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해당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허용기준을 준용한다.

나. 「약사법」 제2조에 의한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한약, 한약제재는 사용을 금지하며, 주요 품목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해 아래와 같으며 사료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사료의 범위에 포함된 제약부산물류와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품목은 제외한다.

1)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목
2)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실려 있는 품목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분의 종류·규격·함량 및 처방 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품목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고대상품목으로 고시한 의약품등